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 7. 10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

- 읍·면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중 목욕탕사용료가 '91. 1. 17 제정된 이래 금액 조정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.
- 그동안 계속적인 유가 인상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함.

주요골자

- 복지회관시설 사용료기준 개정

구 분	현 행	개 정	비 고
일 반 인	800원	1,500원	
학 생	600원	1,000원	
어 린 이	400원	500원	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기간('98. 3. 30 - 4. 18)중 특이사항 없음
- 신.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호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 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복지회관시설 사용료 기준

(단위 : 원)

시설명	기준	사 용 료			비 고
		어 른	학 생	어 린이	
1. 목욕탕	1회	1,500	1,000	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 른: 만19세이상인자 ○ 학 생: 중. 고등학교학생 과13~18세이하인자 ○ 어 린이: 초등학생
2. 회의실					
1)예식장	1회		20,000		○ 1시간 사용기준
2)다목적 집회장 기 타	1회		15,000		○ 3시간 사용기준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
【별표2】 복지회관시설사용료기준 (단위:원)					【별표2】 복지회관시설사용료기준 (단위:원)						
시 설 명	기 준	사 용 료			비 고	시 설 명	기 준	사 용 료			비 고
		어 른	학 생	어 린이				어 른	학 생	어 린이	
1. 목욕탕	1회	800	600	400	○ 어른: 만19세 이상인자 ○ 학생: 중.고등학교학생과 13-18세 이하인자 ○ 어린이: 국민학생	1. 목욕탕	1회	1,500	1,000	500	○ 어른: 만19세 이상인자 ○ 학생: 중.고등학교학생과 13-18세 이하인자 ○ 어린이: 초등학생
2. 회의실						2.					
1)예식장	1회	20,000			1시간	1).....
2)다목적 집회장 기 타	1회	15,000			3시간	2).....
										
										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27조(사용료)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①사용료.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31조(사용료의 부과.징수.이의신청등)①사용료.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.

②사용료.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35조(공공시설)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
평 장 군

우 232-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-2/(0374)32-2011~18/담당 이용화(293)

문서번호 지역 13250-나

시행일자 1998. 6. 8

(경유) (제1안)

발음 내부 결재

참조

제목 조례.규칙심의회 안전 상정

취급		군 수
보존	5년	
부군수	전 결	가치증
과 장	이용화	기획감사실장 장영남
		법무계장 이영환
기안	이 용 화	사회진흥계장 김희준

평창군 읍.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(목욕탕사용료)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조례.규칙심의회에 불입과 같이 안전을 상정코자 합니다.

1. 입법예고기간 : '98. 3. 30 - 4. 18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군보게재 및 읍.면게시공고
3. 안 건 명 : 평창군 읍.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불입 : 평창군 읍.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. 끝.

(제2안)

발음 : 기획감사실장

참조 : 법 무 계 장

제목 : 조례.규칙심의회 안전 상정 협조

평창군 읍.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(목욕탕사용료)을 평창군 조례.규칙심의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불입과 같이 송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입 : 평창군 읍.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.

평 창 군 수